

##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

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-43호(2024.7.10., 일부개정)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의 목적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의7제3항에서 위임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(이하 “산재보험료”라 한다) 지원 수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기준보수”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(실업급여·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)을 말한다.

1의2. “보수액 및 평균임금”이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중·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말한다.

2. “공단”이란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.

3. “소상공인”이란 법 시행령 제4조의14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.

**제3조(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)**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기본계획”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세부추진계획”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급 대상·기간 등의 지원기준
2. 지원사업 추진일정
3. 기타 사업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

**제4조(업무의 수행)** 공단은 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14

에 따른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
1.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
2. 지원 대상 발굴 및 제도 홍보
3.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

**제5조(고용보험료 지원수준)** ①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② 고용보험료 지원은 기준보수 1등급 내지 7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 5년간 지원한다.

③ 공단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지원비율, 기준보수 등급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5조의2(산재보험료 지원수준)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② 산재보험료 지원은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 내지 12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 5년간 지원한다.

③ 공단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지원비율, 기준보수 등급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6조(보험료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)** 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서식의 ‘소상공인 고용·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’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,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③ 공단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에 의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.

④ 공단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4조제1항 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의한 중·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.

⑤ 공단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그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운영지침)**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·개정할 수 있다.

**제8조(준용규정)** 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**제9조(재검토기한)**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[별지 서식]  
<개정 2024.7.10.>

소상공인 고용·산재 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 
(go.sbiz.or.kr) 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## 소상공인 고용·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(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중·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)

접수번호	접수일자			
신청인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	
	주소 : 휴대전화 :	전자우편주소 :		
	상 호 : 사업장 소재지 :	(사업자등록번호 : - - ) (업종 : )		
자영업자 고용보험	가입일	. . .	기준보수 등급	( ) 등급
중·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	가입일	. . .	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급	( ) 등급
지원금 지급계좌	금융기관명	예금주 (신청인)	계좌번호	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